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4

심의일자	2019. 6. 7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/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		
의결번호	2019-구조8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<p>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< 구조안전 분야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OG12(600×600) 보의 최대 철근비를 검토하고, 연직방향으로 만나는 보와 철근간섭을 고려하여 보 단면을 조정하기 바람. ○ 포디움, 지하주차장 부분의 독립기초와 슬래브 구조를 온통기초로 변경하기 바람. ○ 콘크리트 강도계획에서 수직재, 수평재 강도는 공급 가능한 강도를 사용하고 50Mpa 초과시 폭열 검토를 수행하시기 바람. ○ 경사기둥의 경우, 후프철근 상세 및 기둥(경사, 수직) 접합부의 상세도를 작성 하기 바람. ○ Y축 방향의 횡방향 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. ○ 550Mpa를 초과하는 철근 적용시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보를 예를 들어 $f_y=600\text{Mpa}$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, 모든 부재를 검토하여 아래식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, 휨철근을 보강하기 바람. $\Rightarrow K_{tr}/d_b \geq 0.25, (c+K_{tr}) / d_b \geq 0.25$ ○ 오피스동 슬래브에 적용한 POST TENSION은 응력이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9. 6. 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9. 6. 7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/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		
의결번호	2019-구조8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<p>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</p> <p>< 구조안전 분야 >(계속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주택 지상26층 저수조 보(G1:2700×400), 오피스텔 지상23층 기계실 보(G1:2700×400, 단부 상 68-D29/하34-D29) 등은 인장철근이 4.7~4.8%로 취성파괴 우려가 있고, 교차로 만나는 보와 겹치면 배근이 5~8단으로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보 출을 증가시켜 재검토 바람. ○ SRC COLUMN의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구조기준 0714.6.4.1, 0516.4.4.(5)에 따라 횡방향 철근의 직경은 합성부재 장변지수의 1/50, D10이상 D16이하, D16을 해야하나, 시공이 어려우므로 D13을 사용하여 동일단면이 되도록 간격 조정 바람. - II 합성기둥의 측면에 종방향 철근이 없으므로 균열 제어 철근을 배치하기 바람.(도면 52-201) - II형 제작시 반드시 SN강재 사용하기 바람. ○ 철저한 구조감리로 경사기둥과 수직기둥과의 접합부 상세설계를 유의하여 구조 안정성 확보 바람. ○ 성능기반설계를 마이다스 프로그램외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피어리뷰 검토 바람. 끝. 			

2019. 6. 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